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	-----

제출연월일 : 2003. 1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그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며,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그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사업중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7조제4호 및 제5호).
- 나.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에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함(안 제17조제6호).
- 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시설관리 공단의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 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서 2월이내로 조정함(안 제21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 및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마. 입법예고 : 2003. 10. 2 ~ 10. 21(의견없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 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여 동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상가 관리·운영사업
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사업
6.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사업

제21조제5항중 “3월 이내” 를 “2월 이내”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3월 이내” 를 “2월 이내” 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3월 이내” 를 “2월 이내” 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업) (생략)</p> <p>1.~ 3.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4.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5.<u>제1호 내지 제4호</u>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p> <p>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④ (생략)</p> <p>⑤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u>3월 이내</u> 완료하여야 한다.</p> <p>⑥~⑦ (생략)</p>	<p>제17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3. (현행과 같음)</p> <p>4.<u>지하상가 관리·운영사업</u></p> <p>5.<u>지하공동구 관리·운영사업</u></p> <p>6.<u>체육시설물 관리·운영사업</u></p> <p>7.-----</p> <p>8.<u>제1호 내지 제7호</u> ----- -----</p> <p>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u>2월 이내</u>----- -----.</p> <p>⑥~⑦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 지방공기업법

第66條(決算)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2. 12. 8, 2002. 3. 25>

②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사업
2.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3.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등 장묘시설 관리·운영사업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

제21(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④ <생략>

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3년 10월 28일
3. 상 정 일 자 : 제1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사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11.6)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1. 제안이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그 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면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그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사업 중 지하상가, 지하 공동구 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 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7조제4호 및 제5호)
- 나.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에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함 (안 제17조제6호)
- 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시설관리 공단의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함 (안 제21조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손성도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0년 1월 1일 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위탁한 충무체육관, 월평 싸이클 경기장 등 9개 시설의 위탁 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 2000년 12월 1일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운영 동의 안으로 가결된 역전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의 관리·운영사업을 조례 안에 명시하면서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개정예 따라 시설관리 공단의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위탁한 체육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연간 280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위탁 체육시설물중 시의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설을 제외하고, 시의 지원이 있어야만 운영가능 한 체육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생 략

VI. 심 사 결 과 원안가결